스리랑카 비관세장벽 이슈



Sri Lanka New Zealand Non Tariff Barriers Issue

스리랑카, 신규 포장식품 라벨링 및 광고 규정 시행 (2024년 1월 1일 시행)



새로운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 및 광고 규정을 통해 식품 표시 사항 기준 제시

스리랑카는 지난 2023년 1월 17일에 포장식품의 라벨링 관리 및 광고를 규제하는 「식품 규정(라벨링 및 광고) (2022)」을 고시함. 신규 규정은 **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**됨

1. 배경: 스리랑카 보건부는 「식품 규정(라벨링 및 광고)(2022) 」을 도입함. 이 새로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포장식품의 라벨링 및 광고 요건을 규제하며, 현행 식품(라벨링 및 광고) 규정(2005)을 대체함. 신규 규정에 따라 제품의 일반명칭을 3개 언어(영어, 싱할라어, 타밀어)로 표기해야 함

2. 주요 규정 변경 내용

- 1) 제품의 일반명칭은 스리랑카에서 사용되는 3가지 언어(영어, 싱할라어, 타밀어)로 굵게 표기해야 함
- 2) 상업적 명칭 및 브랜드명이 있는 경우, 3개 언어 중 한 가지 이상으로 표시함
- 3) 글꼴 크기는 **1.5mm 이상이며, 굵은 글씨로 표시**해야 함
- 4) 식품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제조일자 및 재포장일자를 표시하여야 함
- 5) 포장 또는 용기의 순 내용물: 그램(q), 킬로그램(kg), 밀리리터(ml) 또는 리터(L)로 표시
- 6) 소비자 경고 문구가 있는 경우, **1.5mm 이상의 글꼴 크기로 3가지 언어 모두 표시**해야 함
- 7) 보관 및 사용 안내문은 3개 언어 중 최소 2개 이상의 언어로 표시해야 함
- 8) 수입제품의 경우 원산지, 수입자의 성명,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
- 9) 수입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3가지 언어 중 하나로 된 라벨이 붙어 있다면, 규정에 부합하는 보충 라벨을 통해 다른 2가지 언어로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
- 10) 적용 제외 대상: 25g을 초과하지 않거나 용량이 30ml를 초과하지 않는 사전 포장 식품



※ 주요 라벨링 표시 사항

하기 내용은 3가지 언어 중 한 가지 이상의 언어로 지워지지 않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함

구분	주요 내용
1	아래의 규정에 규정된 대로 일반명 및 INS 번호*로 허용된 식품 첨가물을 포함하여 식품 제조 시 중량(m/m)의 내림차순으로 일반명으로 식품에 사용된 성분의 전체 목록을 나열함
2	(A) 제조자 및 유통업자의 성명 및 주소, <u>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자의 성명 및 주소</u> (B) 포장업자의 이름과 주소(있는 경우)
3	제품 식별을 위한 배치번호**, 코드번호 또는 코드기호
4	제조일자
5	유통기한
6	대량으로 수입되어 재포장된 식품의 경우 제조연월일 및 재포장일자
7	수입된 식품의 경우 원산지
8	1.5mm 이상의 글꼴 크기로 된 영양 표시
9	본 규정에 규정된 기타 내용

(*) INS번호: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 원료를 구분하기 위한 번호 시스템

(**) 배치번호: 생산 시간, 생산 날짜, 식별코드 등 동일한 생산 특성을 갖는 동일한 제품 그룹을 식별하는 번호 또는 문자

3. 시행일: 2024년 1월 1일

한국 수출 기업, 스리랑카로 식품 수출 시 변경된 라벨링 및 광고 규정 준수 필요

2022년 기준 스리랑카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의 수출 규모는 약 210만 달러이며 알코올 음료, 쌀 및 가공식품 등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확인됨. 한국에서 제조된 식품을 스리랑카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리랑카의 신규 라벨링 및 광고 규정을 확인하고 반영하여 수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함